

[ 전자상거래-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 ]

## 청약철회(계약해제) 통보서

◎ 수신인 : □□ 정보통신  
대표 ○ ○ ○  
서울시 은평구 000로 000-0  
02-000-0000

◎ 발신인 : 소시모  
서울시 종로구 000로 00, 000호  
010-0000-0000

회원아이디 :  
물 품 명 : 노트북  
도 메 인 : www.  
결 제 일 자 : 20 . . . .  
결 제 금 액 : 1,500,000원  
결 제 방 법 : 계좌이체 <또는 무통장입금, 신용카드, 핸드폰결제>

### 청약철회(또는 계약해제)사유

1.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인은 귀사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.
3. 상품불량 / 배송불만 / 서비스불만 / 기타사유 인하여 20 . . . . 자에 청약철회(또는 계약해제)를 여러차례 말하였으나, 귀사는 ( ) 이유로 환불불가를 주장하고 있어,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청약철회(또는 해제)를 요청합니다.
4. 이 경우 동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, 귀사가 청약철회(또는 계약해제)에 따른 환급금 지급 할 것 을 요청하는 바이며, 동법 동조 동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때에는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.

####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명시된 청약철회 기간

-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.
-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 터 7일
-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,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, 통신판매 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안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, 통신판 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
-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·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 개월 이내,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.
-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(우체국에 가는 날짜를 씁니다.) 20 년 월 일

(위의 발신인과 같은 이름을 쓰고 도장 날인을 합니다.) 상기 계약자: (인)

※ 작성이 끝나면 동일한 문서를 2부 더 복사하여 총 3매를 작성합니다.